

계약학과 운영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 2020.09.21. 개정 2022.04.04.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규정은 해전대학교(이하“ 본 대학” 이라 한다) 계약학과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운영위원회

제2조 (정의)

- ① “계약학과”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을 위해 본 대학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·운영하는 학과를 말한다.

제3조 (운영위원회 설치)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종합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위원회(이하“ 위원회 ”)를 둔다.

제4조 (위원회 구성 및 임기)

- ① 위원회는 산업체 및 기관 관계자, 해당학과 학과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,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<개정 2022.04.04.>

제5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.

1. 계약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, 학생선발에 관한사항
2.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
3. 학과운영 계획 및 예산수립에 관한사항
4. 학교와 산업체간 상호지원에 관한사항
5.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6조 (회의)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/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 (수당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별도로 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 (준용규정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(2020.09.21.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4.0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4월 04일부터 시행한다.